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82 호 2019. 7. 1.(월)

선	기 관 의 장
람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84호[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85호[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86호[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87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88호[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37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5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7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84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 1.) 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조례 제4조제1항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권 (인)

2019년 7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85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 1.)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변경
 - 현행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변경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권 (인)

2019년 7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장애인가정”이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 6.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를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일 전후로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기준)”을 “(지원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을”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로 하며, “단, 출산축하용품은 첫째 자녀에 한하며,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를 “이 경우 장애인 가정에 대하여는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출산지원금
- 2. 출산축하용품
- 3. 다자녀가정 대상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 혜택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출생아 부 또는 모의 등록된 장애정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거주 1개월 미만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을 통합하고자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변경(제3조 및 제5조)
 -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거주 →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거주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추가(제2조, 제4조 및 제6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부칙)
- 다자녀가정 용어 정의(제2조 및 제4조)
 -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7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8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공사장생활폐기물, 이사 시 발생한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사장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를 “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일반 쓰레기봉투, 특수규격 쓰레기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로 하며,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특수규격 쓰레기봉투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이사 시 발생한 폐기물 등의”를 “제1항제4호의 대형폐기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 02·12·27, 06·12·29, 08·9·16, 08·12·18>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16조 관련)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관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일 반 용	5 ℓ	90	39	19	148	12	160
	10 ℓ	205	57	25	287	23	310
	20 ℓ	410	93	52	555	45	600
	50 ℓ	1,025	225	127	1,377	113	1,490
	75 ℓ	1,531	330	190	2,051	169	2,220
	100 ℓ	2,049	430	256	2,735	225	2,960
특 수 규 격	30 ℓ	1,302	443	220	1,965	195	2,160
	50 ℓ	2,170	737	259	3,166	314	3,480

【별표 5】 <삭제>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처리수수료

(단위 : 원)

대 상	기 준	수집·운반·처리비	
		수집·운반비	처 리 비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이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	톤당	30,000	시 조례의 반입수수료 규정에 의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중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특수규격 종량제 시행(2019. 7. 1.)에 따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2항 조문 수정
-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제1항 조문 수정
-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1항제1호 별표3 특수규격 쓰레기봉투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추가 및 제5호 삭제, 제2항 조문 수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권 (인)

2019년 7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별표 1 비고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의 최초 20분 이내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 1.)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공영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이내일 때에는 무료로 하는 단서 조항이 시행(2019. 1. 1.)됨에 따라 해당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조제4항제1호라목)
 - 현행 :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 변경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단서조항 신설(별표 1 비고 제4호)
 - 현행 :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 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 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 단위로 계산한다.
 - 변경 :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 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 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의 최초 20분 이내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7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3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형 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사 시 발생한 폐기물”을 “대
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하고,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울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내역(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5 및 별지 제2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제9조제2호 관련)

용도	일반용
색상	녹 색
용량 \ / 가격	판 매 가 격
5 l	160원
10 l	310원
20 l	600원
50 l	1,490원
75 l	2,220원
100 l	2,960원
용도	특수규격 봉투(공사장생활폐기물)
색상	녹 색
용량 \ / 가격	판 매 가 격
30 l	2,160원
50 l	3,480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 및 색상(제2조의2제1항 관련)

용량	용도
5 ℓ	일반용, 재사용
10 ℓ	일반용, 재사용
20 ℓ	일반용, 재사용
50 ℓ	일반용
75 ℓ	일반용
100 ℓ	일반용, 공공용
30 ℓ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50 ℓ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주) ① 쓰레기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거나, 끈을 달아서 쓰레기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색 상

- 일반용 → 녹색
- 공공용 → 엷은 청색
- 재사용 → 흰색
- 특수규격 → 노란색

【별표 5】

쓰레기봉투 재질규격 및 모형(제2조의2제2항 관련)

□ 쓰레기봉투 재질 및 규격 등

종류 (용량)	높이 (cm)	나비 (cm)	뚜께 (mm)	인장강도 (N/mm ²)	신장률 (%)	인열강도(N/mm ²)	
						보통	접은 곳
5ℓ	46.5	26	0.030	26.5↑ (270) [810]	300↑	117.6↑ (120) [360]	88.2↑ (90) [270]
10ℓ	56.5	33	0.030	26.5↑ (270) [810]	300↑	117.6↑ (120) [360]	88.2↑ (90) [270]
20ℓ	69.5	42	0.035	26.5↑ (270) [945]	300↑	117.6↑ (120) [420]	88.2↑ (90) [315]
30ℓ	78.5	48	0.035	26.5↑ (270) [945]	300↑	117.6↑ (120) [420]	88.2↑ (90) [315]
50ℓ	91.5	56	0.045	26.5↑ (270) [1215]	300↑	117.6↑ (120) [540]	88.2↑ (90) [405]
75ℓ	103.5	65	0.050	26.5↑ (270) [1350]	300↑	117.6↑ (120) [600]	88.2↑ (90) [450]
100ℓ	113.5	71	0.055	26.5↑ (270) [1485]	300↑	117.6↑ (120) [660]	88.2↑ (90) [495]

※ 인장강도 및 인열강도에서 ()은 각각 Kg/cm² 및 Kg/cm, []는 최대 하중(g)으로 환산한 값임.

(주) 재질규격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 쓰레기봉투 모형

1. 묶는 쓰레기봉투

○ 일반용

이곳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

○ 공공용

공공용 쓰레기봉투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

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 쓰레기봉투 묶는 표시는 50ℓ, 75ℓ, 100ℓ 봉투만 해당된다.

2. 끈 달린 쓰레기봉투

○ 일반용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쓰레기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

○ 공공용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공공용 쓰레기봉투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

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수규격용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특수규격 쓰레기봉투

-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용 -

1. 이 봉투는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과 불연성 쓰레기 처리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이 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 봉투 이외의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 후 수거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

(단위 : 개)

연번	접수 일시	신고자 (배출자)			용량 (특수규격용)	수 량	수거일시	담당확인
		장소 (주소)	성명	연락처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중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특수규격 종량제 시행(2019. 7. 1.)에 따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의2(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재질규격 등) 제1항 별표4 특수규격용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추가 및 제2항 별표5 특수 규격용 쓰레기봉투 모형 추가
-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1항 조문 수정, 별지 제호 식 수정 및 별지 제2-1호 서식 삭제
- 제9조(쓰레기봉투판매자 준수사항) 제2호 별표2 특수규격용 쓰레기봉투 가격 추가